

제정	2010. 08. 11
개정	2011. 02. 01
개정	2011. 05. 19
개정	2011. 08. 29
개정	2012. 11. 08
개정	2014. 02. 21
개정	2014. 03. 11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에 의한 태권도승품·단심사(이하 승품·단심사)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승품·단 심사업무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승품·단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은 국가협회, 단체, 기관 등은 자체 심사규정을 정하여 국기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3조(심사구분)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1항에 의한 심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품심사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단, 4품에 응시하는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승단심사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3. 특별승단 심사 : 장애인 심사 . 월단심사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승단심사
4. 명예단 심사 : 태권도발전 및 공헌자에 대한 수여자격 심사
5. 추서단 심사 : 태권도공로자가 타계 하였을 경우 상위 단 추서 자격 심사.

② 위 제1항의 3호 특별승단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과목)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실기심사는 기본동작 . 품새 . 겨루기 . 격파 등 해당 승품·단 심사에 필요한 실기 과목으로 시행한다.
2. 이론심사는 필답 . 눈술 심사가 있다.
3. 필요시 각 품·단별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품 . 단별 심사과목은 [표1]의 품·단별 표준 심사 과목의 범위 내에서 심사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과목을 신설 및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심사수수료)**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수수료를 부과한다.
1. 국기원이 승품·단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또는 사범이 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위 1호, 2호 외 심사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③ 시행수수료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제2항 2호에 따라 시행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과 한다.
- ④ 위 제1항과 제3항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및 원가조사를 통하여 심사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위임받은 기관 및 태권도단체와 응시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 ⑥ 수련생을 심사에 추천하는 사범은 심사에 관련된 필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⑦ 심사수수료는 국가별 인당 GDP에 따라 등급을 두어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⑧ 심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미수교국 등 보급 차원에 있는 정책적인 국가
 2.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을 당한 지역 및 국가
 3. 기타, 감면이 요구된다고 판단된 지역 및 국가
 4.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장애우 및 극빈자
- ⑨ 심사 기여도에 따라 국가협회와 태권도단체에는 보조금을, 사범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⑩ 심사수수료의 변경은 심사수수료 체계 및 항목 등을 일정기간 공시 후 시행한다.

- 제6조(응시자격)**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6조 2항에 따라 승품·단 연한 및 연령에 의한 응시자격기준을 [표2]와 같이 정한다.
- ②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3조 4호에 따라 4품에 대한 응시 자격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이 갖는다.
- ③ 위 1항외에 보수교육 등을 응시자격으로 정할 수 있고 보수교육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응시자가 국적 이외 제3국에서 응시 하고자 할 경우 응시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⑤ 응시자가 국적 이외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응시를 원할 경우, 주재국의 지도사범 또는 국가협회의 추천서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승품·승단심사 시행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국가는 국가협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추천권)** ① '심사추천권'이라 함은 심사 응시 및 그 업무 처리를 위한 교육적, 행정적 절차로서 태권도 사범과 태권도단체, 기관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② 국기원 4단 이상자로서 사범자격증을 취득한자에게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며, 추천권자는 응시자의 수련정도와 일정기간 수련정도에 대한 보증으로서 응시에 대한 교육적, 행정적 책임을 지며, 보유단 미만자의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 대하여 심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단, 4단 이상자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태권도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에 한하여 심사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기관은 필요시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해외 응시자로서 심사추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기원 심의위원이 추천하여 심사심의위원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승품·단 심사 시행권한을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에 위임하지 않은 국가 및 지역은 심사추천권을 가진 국기원 등록도장 사범이 국기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⑥ 국기원과 위임계약을 맺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개별 도장에 심사추천을 위한 ID를 부여할 수 있다. 이 ID는 온라인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태권도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만을 대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⑦ 관에 신고된 태권도 시설 또는 태권도 지도 가능 단체 중 ID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위임계약에 따라 심사 시행 최종단체에 직접 접수 할 수 있다.
- ⑧ 위 심사추천 절차 ②~⑦항 중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심사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제8조(자격특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응시자격 특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권도 유공자에 대해서는 7단 이하에 대하여 연한 및 연령의 자격기준 단축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표3]과 같다.
 2. 대학 (태권도학과 . 태권도전공)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3학년 2학기 종료 전 까지 3단을 보유하고, 4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졸업예정자(학사 이수학점 중 80% 이상 이수한 자) 에게는 4단의 응시자격을 각각 부여한다. 단, 월단은 허용치 않는다.
 3. 월단심사 및 기타 자격특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자격특례에 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임단체의 지정 및 계약)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승품·단 심사 위임을 지정할 경우 위임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 국가협회가 자국 내의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장에 대한 조직력이 확보되어 원활한 승품·단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임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협회가 조직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태권도단체에게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3. 승품·단 심사 시행은 태권도 5단 까지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임단체의 특성에 따라 승품·단 심사 위임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승품·단 심사 위임단체 지정은 심사심의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다.

- ③ 승품.단 심사 위임에 따른 위탁계약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위임단체의 권한과 의무) ① 승품.단 심사시행에 대한 위임단체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승품.단 심사시행에 대한 심사평가위원 구성과 심사평가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2.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따른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3.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1조 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② 위임단체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임받은 단체는 매년 12월30일까지 심사평가위원 구성과 년 간 심사일정 계획을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 2. 승품.단 심사 시행에 따른 심사자명부(표4)와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 3.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제11조(심사시행) ① 국기원과 심사위임 기관 및 태권도단체는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시행해야한다.

- 1.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기원에 심사평가위원 또는 감독관을 요청하여 시행한다.
 - 2. 태권도 4품 및 3단까지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4단, 5단은 실기와 필답 심사를 하고 6단 이상 심사는 실기와 논술을 시행한다. 단,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의 상황에 따라 규정을 정하여 심사내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태권도 8단 이상의 심사는 국기원이 시행한다. 단,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국기원의 결정에 따라, 태권도 6단 이상에 대해서도 국기원이 시행한다.
- ② 위 제1항 제3호 정기심사에서 1개 과목이 실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수수료를 면제받고 실격과목에 대하여 차기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수시심사는 제외된다.
- ③ 장애인심사 . 월단심사 및 정책적 판단에 따른 특별승단 심사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위 제1항 제2호의 필답 . 논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⑤ 논술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응시자는 자국어로 작성한 논술의 한국어 번역본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정한 심사시행으로 응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5조 3항에 따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평가위원 구성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평가위원 자격증을 갖춘자로 한다.
- 2. 저단자심사평가위원회는 태권도6단 이상과 승품.단 심사평가위원 자격증 3급 이상의

소지자로 구성한다.

3. 고단자심사평가위원회는 태권도9단 보유자로 하며, 승품.단 심사평가위원 자격증 1급 소지자로 구성한다.

② 고단자심사평가위원은 국기원장이 임명하고, 저단자심사평가위원은 승품.단 심사시행권한을 위임 받은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단, 승품.단심사를 위임받은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③ 저단자심사평가위원회는 5단 이하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실시한다.

④ 고단자심사평가위원회는 6단 이상의 태권도 승단 심사를 실시한다.

⑤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심사과목별 심사평가위원은 각 3인 또는 5인으로 운영하고 응시자 및 심사특성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 1호 외 심사 진행요원은 심사 시행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심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사심의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③ 승품.단 심사결과를 심의 . 의결하기위하여 심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14조(감독관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7조 1항에 따라 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감독관은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위임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③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심사평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4호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 및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과목별 평가기준은 [표5]와 같다.

2. 실기심사는 국기원의 규정된 동작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3. 실기심사 평가기준 및 요령은 [표6]과 같다.

4. 필답심사 평가는 20문항 중 12문항 이상의 정답을 얻은 경우 합격 처리한다.

5. 논술심사 평가기준은 [표7]과 같다.

6. 면접 심사는 태권도활동 경력 및 공적사항 등을 평가한다.

7. 심사 과목 중 1개 과목이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② 심사과목별 채점표는 [표8]과 같다.

③ 심사평가에 대한 심사결과표는 [표9]와 같다.

④ 단,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국기원이 정한 심사과목을 준수하되, 필요시 각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정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장)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2호에 따라 심사장의 제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실기 심사장의 최소 면적은 가로 15m × 세로12m(180㎡ = 약 55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품새 심사장의 면적은 1회 기준으로 1인 20㎡(약6평), 3인 60㎡(약18평), 5인 90㎡(약30평), 9인 170㎡(약54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겨루기 심사장의 면적은 2인 기준으로 가로 10m × 세로10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격파 및 특기 심사장의 면적은 1인당 20㎡(약6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 과목당 33㎡(약10평)이상의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6. 실기 심사장 바닥의 재질은 안전을 고려하여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루, 고무매트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7.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및 재난시설 등의 안전이 허가된 장소여야 한다.

② 심사장 배치 및 평면도는 [표10]과 같다.

③ 단,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국기원이 정한 심사장을 준수하되, 필요시 각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정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복장)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6호에 따른 복장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는 국기원이 지정한 태권도복과 띠를 착용해야 한다. [표11]
2. 승품심사 응시자는 품 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단, 4품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승단심사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4. 도복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을 착용할 수 없다.
5. 도복이외의 복장은 착용할 수 없다. 단, 여성의 경우 백색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6. 심사평가위원과 진행요원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7. 응시자의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는 [표12]와 같다.

② 단,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국기원이 정한 심사복을 준수하되, 필요시 각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정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대책)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 8조 2항 7호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2.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 및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승품.단 심사시행 단체는 응시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 승품.단 심사시행 단체는 겨루기 심사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안전보호용구(머리, 몸통, 남심 등)를 착용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9조(질서유지) ① 심사장내에는 감독관,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의무요원 외에는 출

입할 수 없다.

②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심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해당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4조 3항에 따른 기타 행정처리 등을 정한다.

② 승품·단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심사신청서 1부 [표13]
2. 국내 1품(단) 응시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3.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매
4. 장애인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8,9단 응시자는 태권도활동경력 및 이력서 각 1부

③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 2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의 제출서류 외 보수교육 등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⑤ "명예단"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예단" 요청서1부
2. 이력서 및 공적조서 1부[표14]

⑥ 승품·단 응시자가 국적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재학(재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중 1부
2. 군인의 경우 근무명령서
3. 각국 대사관 입증서류
4. 추천사범의 확인서
5. 기타 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된 서류

⑦ 승품·단 응시자가 국적 이외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응시하는 경우, 주재국의 지도사범 또는 국가협회의 추천서. 단, 승품·승단심사 시행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국가는 국가협회의 추천서.

⑧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인적사항 변경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2. 인적사항 변경의 법적 결정문 또는 변경 사실을 공증한 인증서
3. 국기원 발행 품(단)증 원본과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여권, 주민등록초(등)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4. 기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⑨ 응시자격 특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경기 실적 특례자는 각 국가 태권도협회장 또는 주최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2. 공로실적 특례자는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확인서
3. 본 규칙 제8조 1항 2호에 따른 자격특례자는 총 이수학점 대비 80%이상의 학점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재학증명서(4년제 대학교의 경우 4학년 2학기 재학증명서)

4. 기타 특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 승품.단 심사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따른 행정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운영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0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03. 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